

형식승인(수입신고)표(제68조 관련)

제작회사:	기기형식:
형식승인번호:	형식승인일:
기기고유번호:	수입신고일:
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임을 증명합니다.

비고

1. 표지의 재질은 알미늄판 등으로 하며, 크기는 가로 90mm × 세로 40mm로 한다.
2.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으로 한다.